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13.
제 출 자 : 송 파 구 청 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국민권익위원회」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송파구립체육시설의 운영의
투명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 이용 제한 사유 및 사용허가 취소·정지 기준을 정립하고,
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시설 사용을 제한하며,
그 처분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의2 신설)
- 나.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 사용자의 홍보물 설치를
제한함(안 제13조제3항, 제4항 신설)
- 다. 송파구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(안 제17조제2항, 제3항 신설)
- 라. 송파구 체육시설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위탁참여
제한함(안 제18조의2 신설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2)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의3, 제15조
- 3)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(의안번호 제2019-483호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분석평가),
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

라. 기 타

- 1) 개정문안, 신·구조문 대비표, 관계법령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첨
- 2) 입법예고: 2026. 7. 22. ~ 8. 11. (20일간)
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-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.
 1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 2.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 3.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.

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-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내에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배너, 전단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.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위탁참여의 제한)

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수탁자는 그 취소 또는 해지일부터 1년간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운영의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계약해지의 사유가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①~③ 생략 <u><신 설></u>	제8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 ①~③ (현행과 같음) 제8조의2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. 1.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.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.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③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.
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생략 <u><신 설></u>	제13조(사용자의 책임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 내에 입간판, 현수막, 벽보, 배너, 전단 등 홍보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제17조(감독)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11.11.14.> <u><신 설></u>	<u>제17조(감독)</u>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<u>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</u> ③ <u>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
제18조(위탁의 취소) 생략	제18조(위탁의 취소) 현행과 같음
<u><신 설></u>	<u>제18조의2(위탁참여의 제한)</u> <u>제18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수탁자는 그 취소 또는 해지일부터 1년간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위탁운영의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.</u> <u>다만, 계약해지의 사유가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
관 계 법 령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·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3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,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5. 18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2. 3., 2021. 5. 18.>

④ 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·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2. 3., 2021. 5. 18.>

□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)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5.25., 2009.1.8., 2010.1.7., 2017.9.21., 2025.5.19.>

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5.25., 2009.1.8.,

2010.1.7.)

③ 시장은 장애인·노인 등의 취약계층(이하 "취약계층"이라 한다)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9.26.>

1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
2.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
3.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. <신설 2022.7.11.>

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예약 방법에 있어 취약계층의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·전화·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24.9.30.>

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5조의3(사용허가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·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.3., 2025.5.19.>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2.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3.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에 따라 사용·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. <신설 2025.1.3.][본조신설 2023.7.18.]

제15조(사용자의 설비 등)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, 입간판, 현수막,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 <개정 2009.1.8., 2017.9.21., 2022.7.11.>

□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(의안번호 제2019-483호)

- 의안명: 국민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투명성 제고방안
-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- 시설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(예 : 1년간) 위탁참여 제한
- 공공체육시설의 특정 장소에 특정단체 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 홍보물 등의 설치 금지(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)
- 체육시설 이용실태(예약현황, 사용현황, 관리상태 등)에 관한 정기점검(예 : 반기별) 의무화
- 과도한 음주·흡연·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일정 기간(예 : 30일간)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

현행	개선(예시)
○○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(위탁계약의 해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1.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.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6조(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. 제17조(시설의 개방)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○○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(현행과 동일) ② <u>제1항 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.</u> 제16조(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, 홍보물(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)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(단,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) 제17조(시설의 개방) ④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<u>매 반기</u>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선(예시)
○○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	○○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(사용허가의 취소) ① (현행과 동일) ② <u>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.</u> ③ <u>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.</u>

※발췌: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(의안번호 제2019-483호)

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·운영 조례」

2. 미첨부 근거(이유)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

4. 작성자

- 작성자: 주 무 관 행정7급 김 용 득
- 검토자: 체육시설팀장 행정6급 박 희 경
- 결재자: 생활체육과장 행정5급 김 영 옥